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, 훈령(제2015-179호, 180호, 181호, 182호)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79호 (2015.10.20)
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0호 (2015.10.22)
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1호 (2015.10.22)
 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2호 (2015.10.22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」(보건복지부 제 2012-178호, 2012.12.28.),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-176호, 2015.10.2.),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65호, 2015. 9. 22.),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-166호, 2015. 9. 23.)을 붙임과 같이 개정, 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- 붙임 : 1. 고시 제179호 훈령 개정문
 2. 고시 제180호 고시 개정문 및 급여 상한금액표
 3. 고시 제181호 고시 개정문 및 급여 상한금액표
 4. 고시 제182호 고시 개정문

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병원장

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16 (2015.10.23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7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jyh@kha.or.kr